

2. 消防法 施行令中 改正令

지난 4월 4일 소방법 개정에 이어서 시행령 개정령이 11월 6일 공포 되었다. 同改正令中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며 또한 내무부에서는 동시행령에서 제외한 소방시설 및 위험물시설 기술 기준령도 심의중에 있어 금년내에 공포될 것이라고 한다.

1. 改正理由

- 건축 동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 소규모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국민의 소방 시설 설치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
- 농어촌지역 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취급량의 상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 소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상의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

2. 主要改正内容(要約)

- 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관서의 동의에 있어서 주택 및 3층이하의 공동주택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함(제 4 조).
- ② 방염처리대상 특수장소가 다음과 같이 완화 또는 강화됨(제 11 조)

방 염 처 리 대 상 물	현 행	개 정
공장, 도서관, 시장, 백화점, 학교, 공동주택, 지하가	전 부	삭 제
카바레, 댄스홀	전 부	연면적 100㎡이상
의원, 조산원등 종전 병원이 아닌곳으로 입원실이 있는곳	해 당 없 음	전 부
유흥음식점	연면적 200㎡ 이상	연면적 100㎡ 이상
대중음식점	해 당 없 음	지하층에 설치된 것으로 연면적 100㎡ 이상

※ 기타 특수장소는 현행과 동일함.

- ③ 특수가연물에 합성수지류 추가(제 12 조 제 2 항, 별표 4)

품	명	수	량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	
	기타의 것	3,000 kg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를 말하며 고무류, 섬유류 및 지류와 이같은 부스러기를 제외함.

④ 소방시설의 종류중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추가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의 지하가에는 설치토록 하고 경보설비중 소방판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 및 비상경보기구를 제외함(第13조 및 第21조)

⑤ 복합건축물은 소방시설을 적용(지하가 제외)함에 있어서 그 용도별로 각각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도록함.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복합건축물은 각 용도별 해당 수치를 제 17조 내지 제 19조에서 규정된 용도별 기준 수치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일 때는 소방시설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유도등과 유도표지가 경합하는 층에 있어서는 유도등을 설치토록 함.

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나. 지하층, 무장층 또는 3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第15조 및 第22조)

⑥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수장소를 통합 분류

종전에는 소방시설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별로 적용대상 특수장소(20개항) 및 면적을 표시 함으로써 상당히 복잡하였던 결점을 개선하여 특수장소를 아래와 같이 6가지로(산림, 아케이드 및 府車는 특수장소에서 제외) 통합, 분류하여 특수장소별로 설치대상 소방시설을 명시 함으로써 간편화 함

특수장소의 분류 대비

개	정	현	행 (별표 1)
제 1	종 장 소	1, 2, 3, 4, 5, (공동주택 제외)	6, 9
제 2	종 장 소	5 (4층이상 공동주택)	7, 8, 10, 11, 12, 15.
제 3	종 장 소	13, 14	
지	정 문 화 재	17	
지	하 가	18 (나)	
복	합 건 축 물	16	

⑦ 화재위험도가 낮은 소규모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함(제 17조~제 22조)
: 소방시설 조건표 참조(부록)

⑧ 포소화기의 소화약제충진, 소방설비의 표시등, 유도등의 광원 교체등 경미한 공사는 소방설비기사가 아니라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함(第27조)

⑨ 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외에 실소비자에게도 위험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第34조 第1號)

⑩ 제2종판매취급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수량을 종전에는 지정수량의 5배이상 15배 미만이던 것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20배(단위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경우와 면단위이하 지역의 경우에는 35배) 미만으로 확대함(第34조 第2號 나목)

⑪ 소방용기계, 기구등 제조업허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험물제조소등 허가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각각 위임함(第62조)

⑫ 소방법의 개정으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3. 本·支部 點檢業務 實務者 會議 開催(下半期)

지난 10월 7, 8일 양일간 본·지부의 과장급 이상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本會議에 앞서 조창현 점검담당이사는 훈시를 통해 協會는

• 금융 Pool의 단계적 해제로 수입 감소 등의 난관이 예상되나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 시험소 설립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총력을 집중, 사전준비를 완벽하게 해 나갈 것이며,
• 기술직원의 해외연수는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여 최대한의 연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또한 협회를 국가적인 종합방재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겠으며,
• 이를 위해서 전 직원은 자체 실력 배양과 일치단결에 힘써줄 것을 역설하였다.

本會議中 방재연구부의 이한연과장의 「'82년도 기술부서 운영방침」이 전달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 안전점검업무를 개선하여 점검의 內實化를 기하며
- 전직원의 능력 향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 방재기술의 보급 확대로 對民 奉仕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등이다.

한편 점검1부의 이신근대리는 「해외 연수보고」를 통하여 영국보험대학(C.I.I)에서 수강한 각종 보험기초이론과 영국재보험회사(M&G)에서의 재보험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 과정 및 내용을 보고하였으며,